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전혜연 의원 대표발의]

의 안 번 호 412

발의연월일 : 2024. 4. 4.

발 의 자 : 전혜연, 김지훈(국), 이수련,

박은경, 한근수, 박윤옥,

정현미, 원주영, 김지훈(민)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지역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·발전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·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 적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
나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 신설(안 제5조제2항제6호~제8호)

다.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의 명확화(안 제10조제1호~제4호)

라. 제목변경 및 지원 내용 추가 및 신설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-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- 6. 관련 법령 :
 - 「공예문화산업 진흥법」

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말하며,"를 "말하며, 나전칠기, 도자공예, 한지공예 등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"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"을 "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6. 공예업체의 디자인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
- 7. 공예업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판매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공예품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 중 "시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공예업체가

관계 법령을 위반 하였을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, "따른 우수공예품 또는 우수공예업체의"를 "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또는 우수공예업체로 선정된 경우
- 2. 우수공예업체로서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우수공예품으로서 개발 및 보존 가치를 상실한 경우
- 4. 그 밖에 제9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의 제목 "(지원사업 등)"을 "(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경진대회"를 "경진대회, 전시회, 공예축제 개최 및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전시회 개최"를 "개발 및 생산장려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 - 3.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공예품"이란 공예의 결과물	2
로서 실용적·예술적 가치가	
있는 물품을 <u>말하며,</u> 민족 고	<u>말하며, 나전칠기,</u>
유의 전통적인 기술·기법이나	도자공예, 한지공예 등
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	
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	
소재나 기술·기법을 활용하여	
제작한 현대 공예의 제품을	
말한다.	<u>.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</u> 에	5. <u>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</u>
관한 사항	<u>시설 확충</u>
<u><신 설></u>	6. 공예업체의 디자인 개발 및
	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
	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
소)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 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공 예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 하 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우 수공예품 또는 우수공예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7. 공예업체의 유통활성화를 위 한 전시장 및 판매시설 지원 에 관한 사항
- 8. 공예품 생산을 위한 전문인 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 9.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 제10조(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 공예업체가 시장이 정한 선정기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----- 따른 ---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또는 우수공예업 체로 선정된 경우
- 2. 우수공예업체로서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우수공예품으로서 개발 및

<신 설>

- 제11조(지원사업 등) 시장은 남양 주시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 예품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공예품 <u>경진대회</u> 참가지원
 - 2. 공예품 전시회 개최 지원

<신 설>

3. ~ 5. (생략)

보존	가치	를	상각	실 한	경우)_

4. 그 밖에 제9조제5항에 따른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경우

제11조(지원) -----

•		
	•	

- 1. ---- <u>경진대회, 전시회, 공예</u> <u>축제 개최 및</u> -----
 - 2. ---- 개발 및 생산장려금 --
 - 3.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 영 지원
 - 4. ~ <u>6</u>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「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5.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 - 7. 공예업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판매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 - 제11조(지원사업 등) 시장은 남양주시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2.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
 - 3.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비용 추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※ 참고〈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제작비 지원〉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액	지원금액	지원수
2021년	6,000	5,098	6명
2022년	6,000	5,292	13명
2023년	6,400	4,825	7명

4. 작성자

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

관계법령

☑ 「공예문화산업 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예"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, 기술, 소재(素材), 문양(文樣)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(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) 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.
- 2. "공예품"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,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·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 대적인 소재나 기술·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.
- 3. "공예문화산업"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(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개발·창작·제작·유통·전시·소비·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,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